

1. 개정이유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제품 출시 전에 일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전문 검사기관이 현행 2곳에 불과하여 검사 결과 회신 등이 지연된다는 의견이 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검사 지연 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기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 전문기관 지정 여부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2. (생 략)</p> <p>② (생 략)</p>	<p>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u>」에 <u>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u></p> <p>3. <u>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u></p> <p>4. (현행 제2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